

## 경운대학교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비교과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**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분하며 7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인재개발처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대학생활지원센터장, 취업지원센터장, 학생상담센터장은 당연직위원에 해당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③ 위원장은 인재개발처장이되며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01.>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본부의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비교과과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을 임무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 <개정 2021.09.01.>

1. 비교과과정의 총괄관리 및 개선 활동에 대한 검토
2. 비교과과정 편성계획 수립
3. 비교과프로그램 타당성 검토
4. 비교과과정 성과보고서 결과 분석
5. KW-CDP 마일리지 관련 비교과프로그램 검토
6. 기타 비교과과정 관련된 사항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5조(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인재개발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### 부 칙 <2020.01.23.>

1.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.
2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비교과과정운영위원회 규정은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 규정으로 대체한다.

부 칙 <2021.09.01.>

1.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